2016회계연도

결산감사보고서

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

2017 년 5 월 일

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이사장



학교법인송원대학교

감 사 담 당 표

순번	기 관 별	감 사 담 당	비 고
1	송 원 대 학 교	전 병 문	
2	송 원 유 치 원	정 무 웅	
3	법 인	정 무 웅	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,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2017. 4. 24부터 2017. 4. 25까지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및 산하 각급 학교(송원대학교, 송원유치원)의 2016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(결산서)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법인 및 송원대학교의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송원유치원의 회계처리도 적정하였습니다.

2017년 4월 25일

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감사 정 무 웅 (서명)

감사 전 병 문 (서명)

피감사자(입회인) 송원대학교 행정지원과장 이기정 (서명)

송원유치원 원 장 노민자 (서명)

법 인 사무처장 정대훈 (서명)